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246호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9일

중 소 기 업 청 장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임전결 방법, 규제과제 개선권고, 처리결과 회신 등 운영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법적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24조

3. 주요 내용

가. 옴부즈만지원단에서 관리하는 기준에 맞추어 규제과제, 애로 과제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법의 개선권고 용어를 반영(안 제2조 제5호 내지 제7호, 제10호)

- 나. 음부즈만 업무를 지원단에 위임하고, 필요한 경우 음부즈만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
- 다. 파견 직원 또는 파견전문위원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파견전문위원으로 통일(안 제21조 내지 제23조, 안 제25조 내지 제27조)
- 라. 지역위원회 개최를 격월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음부즈만위원회 회의를 분기별에서 반기별 개최로 완화(안 제40조제1항 및 제45조)
- 마. 의견 제출과제에 대한 처리절차를 검토, 협의, 종결, 개선권고 단계로 분류(안 제48조제2항)
- 바. 규제·애로 과제에 대해 검토 후 개선건의 및 협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내지 제4항)
- 사. 규제·애로 과제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종결회신문(별지8) 서식을 수정하여 처리결과 내용을 반영(안 제51조)
- 아. 개선건의 수용과제 및 개선권고 과제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점검내용을 공표(안 제52조)
- 자. 기업민원 위반행위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기업민원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53조제4항)
- 차.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별지> 서식에서 사용한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별지2-①, 별지11, 별지12 서식)

4.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8일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옴부즈만지원단)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중소기업청(옴부즈만지원단)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110-30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8(관훈동) 동덕빌딩 4층
옴부즈만지원단
 - 팩스 : 02-2100-4941
- 문의 : 중소기업청(옴부즈만지원단) 02-730-2491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개정(안) 전문 1부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24조,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중소기업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 2,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 2에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 -----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 2에 의한 옴부즈만지원단----- ----- -----,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문위원 등”이라 함은 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채용된 전문위원 및 홍보위원 등 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는 계약직 근로자를 말한다.	제2조(용어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 ----- -- 영 제15조제2항에 ----- ----- -----,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5. “규제과제”라 함은 <u>제도개선</u>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선권고안을 작성할 과제를 말한다.	5. ----- <u>기업의权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u> 으로 규제의 정비가 필요한 -----.
6. “애로과제”라 함은 <u>부처의 의견을 조회하여 전의자에게 안내해 종결이 가능한 과제</u> 를 말한다.	6. ----- <u>규제과제 외에 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불합리한 관행, 부당한 대우 등으로 기업이 불편을 겪는 과제에 대해 규제의 정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u>
7. “해당없음 과제”라 함은 <u>전의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과제 처리가 불가한 과제</u> 를 말한다.	7. ----- <u>규제 및 애로사항이 아닌 과제로 전의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특정한 정책의 신설을 요구하여 지원단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u>
8. · 9. (생략)	8. · 9. (현행과 같음)
10. “개선권고”라 함은 옴부즈만이 <u>관계 업무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선 및 애로 해소를 권고하는 것을</u> 말한다.	10. ----- <u>관계 업무기관에 개선을 권의한 과제 중에서 필요한 경우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을 -----.</u>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제6조(위임전결사항) ① <u>지원단의</u>	제6조(위임전결사항) ① <u>법령에서</u>

위임전결사항은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이하 “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② (생략)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위임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 3. (생략)

<신설>

<신설>

제10조(수당등의 지급) 중소기업

규정한 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단에 위임하며, 지원단의 위임전결사항은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

----- 옴부즈만 또는 상급자의 -----.

1. 옴부즈만 또는 상급자의 -----.

2. · 3. (현행과 같음)

4.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옴부즈만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의 지급) -----

<p>청장은 파견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u>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u>」 별표 15에 준하는 직급 보조비 및 비고3에 명시한 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p>	<p>----- 「<u>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u>」 ----- ----- -----.</p>
<p>제11조(근무성적평가) 읍부조만은 「<u>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u>」에 따라 파견공무원의 근무실적에 관한 의견을 <별지 1>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매 반기말 <u>원소속기관장에게</u> 제출할 수 있다.</p>	<p>제11조(근무성적평가) ----- 「<u>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u>」에 ----- ----- ----- ----- <u>원 소속기관장에게</u> ----- -----.</p>
<p>제13조(기타) <u>이</u>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u>국가공무원복무규정</u>」을 준용한다.</p>	<p>제13조(기타) <u>이</u>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 「<u>국가공무원 복무규정</u>」을 ----- -----.</p>
<p>제14조(채용) ① (생략) ② 중소기업청장은 전문위원 등을 「<u>무기계약근로자등인사관리규정</u>」에 따라 채용할 수 있으며, 규제개선 관련 경력자 및 관련분야의 학위소지자를 우대 할 수 있다.</p>	<p>제14조(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u>」에 ----- ----- -----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근무평가) ① 전문위원 등의 근무평가는 <u>중소기업청 인사관리규정</u> 제20조 제1항에 따른다.</p>	<p>제16조(근무평가) ① ----- ----- 「<u>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u>, 제20조제1항에 -----,</p>
<p>② 평가 등급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p>	<p>② 평가등급은 ----- -----.</p>
<p>제17조(성과상여금) 전문위원 등의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u>평가 등급</u> 및 지급 기준액 등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p>제17조(성과상여금) ----- ----- -----, <u>평가 등급</u> ----- -----.</p>
<p>제18조(전문위원 등 복무) ① (생략) ② 기타 전문위원 등의 복무와 관련하여 <u>동 지침</u>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p>	<p>제18조(전문위원 등 복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전문위원</u> ----- ----- <u>동 규정</u>에서 ----- -----.</p>
<p>제21조(파견요청) ① (생략) ② 중소기업청장은 옴부즈만에게 요청받은 <u>사항</u>에 대하여 <u>민간기관</u> <u>파견</u>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의거 <u>민간기관</u>의 장에게 직원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p>	<p>제21조(파견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민간기관</u> <u>인력파견</u> <u>사항</u>에 대하여 ----- ----- -----, -----.</p>

<p>제22조(의무) ① 파견전문위원은 복무에 관하여 옴부즈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② <u>파견 직원은</u>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유지하여야 한다.</p>	<p>제22조(의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파견전문위원은</u> ----- ----- -----.</p>
<p>제23조(근무실적 관리) ① 옴부즈만은 파견전문위원의 근무실적, 근무상황 등이 기록된 <별지 1>의 <u>근무실적기술서를</u>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 말 파견전문위원의 <u>원소속기관장에게</u> 통보 할 수 있다.</p>	<p>제23조(근무실적 관리) ① ----- ----- ----- --- <u>근무실적 기술서를</u> ----- ----- ----- <u>원 소속기관장에게</u> --- -----.</p>
<p>제25조(복무관리 등) <u>파견 직원의</u>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원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p>	<p>제25조(복무관리 등) <u>파견전문위원의</u> ----- ----- ----- -----.</p>
<p>제26조(근무상황) <u>파견 직원의</u> 연가 및 출장 등은 단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u>파견 직원의</u> 휴가 운영은 <u>소속기관의</u> 규정을 따른다.</p>	<p>제26조(근무상황) <u>파견전문위원의</u> ----- ----- <u>파견전문위원의</u> -----<u>원 소속기관의</u> -----.</p>
<p>제27조(국가업무조력사례금 및</p>	<p>제27조(국가업무조력사례금 및</p>

<p>여비) ① (생 략)</p> <p>② <u>파견 직원의</u> 여비는 <u>공무원 여비규정</u> 별표1의 '2호 가' 항목을 적용한다.</p>	<p>여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파견전문위원의</u> ----- 「<u>공무원 여비 규정</u>」----- -----,</p>
<p>제28조(기타) <u>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u></p>	<p>제28조(기타) <u>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u></p>
<p>제33조(위촉) ① <u>지방중소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명예음부즈만 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별지2>의 양식으로 20명 이내로 음부즈만에게 추천 할 수 있다.</u></p>	<p>제33조(위촉) ① ----- ----- -- <u>영 제13조제2항의</u> ----- ----- ----- ----- ----- -----, -----.</p>
<p>② <u>음부즈만은 제1항에 의해 추천받은 자를 <별지3>의 양식으로 명예음부즈만으로 위촉하고 <별지3>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u></p>	<p>② ----- ----- <u>명예음부즈만으로</u> <u>위촉하고 <별지3>의 위촉장을</u> <u>수여할 수 있다.</u></p>
<p>제36조(해촉) (생 략)</p> <p>1.~5. (생 략)</p> <p>6. <u>업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u></p>	<p>제36조(해촉) (현행과 같음)</p> <p>1.~5. (현행과 같음)</p> <p>6. <u>업무수행 과정에서</u> ----- -----</p>

인에 제공하여 타인으로 하여 금 이득을 얻게 한 경우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40조(지역위원회 개최) ① 지역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 칙적으로 <u>격월로</u> 개최하고, 개 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 를 <별지4>의 양식으로 옴부 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지역위원회 개최) ① ----- ----- <u>분기별 1회 이상</u>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옴부즈만으로 하 며, 위원은 <u>제39조 규정에 의한</u> <u>지역 대표 명예옴부즈만</u> , 기타 옴부즈만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4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제34조 규정에 의한 지</u> <u>역대표 명예옴부즈만 및</u> ----- -----.
제44조(역할) 위원회의 역할을 다 음과 같다.	제44조(역할) (현행과 같음)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신설>	<u>4.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사전</u> <u>검토</u>
4.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45조(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u>분</u> <u>기별로</u>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	제45조(운영) ----- <u>반</u> <u>기별로</u> ----- -----

는 필요시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제47조(의견제출 방법) ①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자의 성명, 규제·애로의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명시하여 <별지6>의 서식에 의거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혁신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청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은 <별지6>의 서식으로 규제·애로 과제를 발굴하여 매달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8조(의견제출 관리) ① 제출된 과제는 규제과제, 애로과제 및 해당없음 과제로 구분한다.

② 의견제출 과제 추진현황은

-----,
제47조(의견제출 방법) ① 규제·애로 의견제출은 -----

-----<별지6>의 의견제출문 서식을 첨부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서 정의한 전자문서 포함)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매월 -----.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의견제출 관리) ① 제출된 과제는 규제과제, 애로과제 및 해당없음 과제로 구분하여 규제혁신플랫폼에 등록 후 관리한다

② 의견제출 과제에 대한 처리

검토 중(개선안 마련, 부처협의)과 종결(안내·시정, 정책건의, 수용, 일부수용, 장기검토, 이첩·철회) 단계로 구분하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개선안 마련: 지원단의 과제별 검토자가 규제애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단계

2. 부처협의: 지원단의 규제애로 개선권고에 대해 부처의 수용여부 등을 조회하고 부처의 반대의견에 대해 재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

3. 안내·시정: 기시행 등으로 의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법령 개정사항이 필요 없어 종결

4. 정책건의: 개별 고충민원으로 규제개선 필요성을 낮으나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규제애로를 알리고 종결

5. 수용: 지원단 규제애로 개선권고를 관계 행정기관이 전부 수용하여 종결한 것으로, 법령

절차는 검토, 협의, 종결, 개선권고 단계로 구분하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검토: -----

-----,

2. 협의: 옵부즈만의 규제·애로 개선건의에 대한 관계 업무기관의 의견에 -----업무기관의 의견에 -----
-----,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개정 등 조치사항을 반기별로
모니터링 실시

6. 일부수용: 지원단 규제애로
개선권고를 관계 행정기관이
일부 수용하여 종결한 것으로,
법령 개정 등 조치사항을 반기
별로 모니터링 실시

7. 장기검토: 규제개선의 필요
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
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
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과제로 지원단 또는 관
계 기관이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종결

8. 수용불가: 개선건의 과제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이 타
당성이 높고 규제개선 필요성
이 낮아서 종결

9. 이첩·철회: 관계 기관이 직
접 처리하거나, 의견제출자가
과제 처리를 원하지 않아 종결
<신설>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3. 종결: 과제 처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
단계로 처리완료, 장기추진, 이
첩·철회로 구분

<신 설>

제49조(과제처리의 예외) ① 옴부즈만이 행정기관에 개선을 건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의할 수 없다.

1.~3. (생략)

제50조(애로과제의 해결) ① 옴부즈만은 애로과제에 대하여 <별지7>의 서식으로 부처의견을 들어 <별지8>의 서식으로 의견제출자에게 답변한다.

② 제1항의 답변은 안내시정, 정책건의, 수용, 일부수용, 장기 검토, 수용불가, 이첩·철회 등으로 구분한다.

<신 설>

4. 개선권고: 개선건의 과제에 대해 협의결과, 개선(일부개선 포함)되지 않은 과제 중 필요한 경우 옴부즈만이 관계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

제49조(과제처리의 예외) ① -----
-----업무기관에-----

-----,

1.~3. (현행과 같음)

제50조(규제·애로 과제의 해결)
① ----- 규제·애로 과제에 대하여 검토 및 관계 업무기관의 의견을 들어 의견제출자에게 답변한다.

②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과제에 대해 검토 후, 개선 건의문을 작성하여 관계 업무기관의 장에게 개선건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개선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옴부즈만은 자체적으로 관계 업무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거나 또

<신설>

제51조(규제과제의 해결) ① 읍부즈만은 규제과제에 대해 <별지9>서식으로 업무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의한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읍부즈만은 자체적으로 또는 규제를 조정 또는 총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개선 유관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장기검토 과제로 구분하거나 자체 종결

는, 규제를 조정 또는 총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개선 유관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 규제·애로 과제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읍부즈만은 관계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제51조(과제 처리결과 통보) ① 읍부즈만은 의견제출 과제에 대해 검토·처리한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규제·애로 과제의 처리결과를 <별지8>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팩스 포함)으로 회신한다. 다만, 의견제출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혁신플랫폼에 등록하는 것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③ <삭제>

할 수 있다.

<신설>

③ 과제의 처리결과 내용은 정책안내, 장기추진, 개선, 일부개선, 수용곤란, 이첩·철회로 구분한다.

1. 정책안내: 의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령 개정이 필요 없어 관련 정책을 설명

2. 장기추진: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어나 규제대안 마련을 위한 추가연구 및 업무기관과의 장기적인 협의가 요구되어 현 시점에서는 과제처리를 완료하나, 지원단에서 지속적인 검토 및 협의를 실시

3. 개선: 옴부즈만의 규제·애로 개선건의를 관계 업무기관이 전부 수용

4. 일부개선: 옴부즈만의 규제·애로 개선건의를 관계 업무기관이 일부 수용

5. 수용곤란: 개선건의 과제에 대하여 관계 업무기관 의견의 타당성이 높음

6. 이첩·철회: 처리기관이 별도

로 있어 관계 업무기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의견제출자가 과제 처리를 원하지 않아 완료

제52조(이행점검 및 공표) ① 움부즈만은 움부즈만이 개선한 과제에 대해 매 반기 말 이행실적을 <별지10>의 서식으로 점검한다.

<신설>

② 움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규정에로 개선, 권고, 이행점검, 미이행 사유 등 주요 활동에 대하여 매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한다)에 3일 이상 공표할 수 있다.

제52조(이행점검 및 공표) ① 움부즈만의 개선권의 과제 중 업무기관이 수용(일부수용 포함)한 과제에 대해 지원단은 -----

-----.
② 움부즈만이 개선권고한 과제에 대해 6월 이내에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 등을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③ ----- 제1항의 이행실태 내용 및 제2항의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실태 및 미이행 사유 등 주요 점검내용 등을 -----

----- 공표 할 수 있다.

<p>제53조(위반행위 신고) ① 옴부즈만은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에게 인격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u>기명의</u> 문서로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과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함께 요구 할 수 있다.</p>	<p>제53조(위반행위 신고) ① ----- ----- ----- ----- --- <u>민원기업명의</u> ----- ----- ----- ----- -----.</p>
<p>② · ③ (생략)</p> <p><u><신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옴부즈만은 위반행위 신고 사항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기업민원 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u></p>
<p>제54조(위반행위 처리) ① 옴부즈만은 <u>신고에</u> 대하여 관련 기관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민원 보호정책 위반행위의 여부 등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p>	<p>제54조(위반행위 처리) ① ----- ----- <u>위반행위 신고에</u> ----- ----- ----- ----- ----- ----- ----- -----.</p>
<p>② 옴부즈만은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위해, <u>만족도 및 실태조사</u> 등을 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② ----- -----, <u>기업민원 보호 만족도 및 위반행위 실태조사</u> ----- ----- ----- -----</p>

<p>제55조(목적) <u>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4항</u>에 따라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옴부즈만이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하기 위해 적극 행정 징계감면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59조(심의회운영) ① <u>면책 요청</u>을 받은 옴부즈만은 징계의결 요구 기간 내에 비위 혐의 적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② <u>심의에 회부된</u> 안건은 참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p> <p>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의거, 의결된 심의 결과를 징계의결 요구 기간 내에 해당 기관에게 <별지12>의 “<u>징계감경 또는 면제건의서</u>”를 작성하여 건의 할 수 있다.</p>	<p>-----, 제55조(목적) 법 제23조 제4항에 -----</p> <p>-----</p> <p>-----</p> <p>-----</p> <p>-----</p> <p>-----</p> <p>-----</p> <p>-----</p> <p>-----</p> <p>-----, 제59조(심의회운영) ① <u>징계 감경 요청서를</u> -----</p> <p>-----</p> <p>-----</p> <p>-----</p> <p>-----</p> <p>-----, ② <u>심의회에 상정된</u> -----</p> <p>-----</p> <p>-----, ③ -----</p> <p>-----</p> <p>-----</p> <p>----- <u>징계 감경 또는</u></p> <p>----- <u>면제 건의서를</u> -----</p> <p>-----</p>
--	---

<신설>

제6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은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공표 후 3년인 2017년 8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①> 명예음부즈만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개인[신물]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항증소기 암호화 규칙

- 기泄규제 개선 위원회 운영자 완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민족·종교·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인증)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멤버가입판증명사업 등록, 협약관계의 출장·휴지·이동·관리, 고객안堵도 조사, 기타 보험상의 무이밀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본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액의 제공한 정보 : 학력, 근무경력, 자격증, 수상경력, 전봉림 등급점가(점과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물)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등의 일정으로부터 할당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할당일로부터 후에는 결제하고 조사, 운송해결, 민원처리, 보험상의 무이밀 및 멤버가입판증명사업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 등의를 거두할 권리 및 듣의를 거두할 경우의 통이익 : 위 개인(신물)정보 및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등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듣의하실 경우 개인(신물)정보 및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 지역구제개선위원회 및 업체별 우편번호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동기관에서 정체자료로 활용 등
 - 제공할 개인(신물)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학력, 근무경력, 자격증, 수상경력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물)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물)정보는 제공일 날로부터 등의 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

개인[신물]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항증소기 암호화 규칙

- 기泄규제 개선 위원회 운영자 완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민족·종교·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인증)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멤버가입판증명사업 등록, 협약관계의 출장·휴지·이동·관리, 고객안堵도 조사, 기타 보험상의 무이밀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본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액의 제공한 정보 : 학력, 근무경력, 자격증, 수상경력, 전봉림 등급점가(점과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물)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등의 일정으로부터 할당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할당일로부터 후에는 결제하고 조사, 운송해결, 민원처리, 보험상의 무이밀 및 멤버가입판증명사업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 등의를 거두할 권리 및 듣의를 거두할 경우의 통이익 : 위 개인(신물)정보 및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등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듣의하실 경우 개인(신물)정보 및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 지역구제개선위원회 및 업체별 우편번호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동기관에서 정체자료로 활용 등
 - 제공할 개인(신물)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학력, 근무경력, 자격증, 수상경력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물)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물)정보는 제공일 날로부터 등의 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

- 유·이용합니다. 등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을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용량제한, 인원처리, 보호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합니다.
- 등의를 거두할 권리 및 등의를 거두할 경우의 흥이익 : 위 개인정보(신체) 정보의 제공에 관한 등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시장에 등의하여인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관계의 출입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 용·공유의 목적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인증)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등의방법 □ 등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등의방법 □ 등의하지 않음 □)
제공 등의 목적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인증)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등의방법 □ 등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등의 제공등의 목적	본인은 중소기업청장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약관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방법 □ 등의하지 않음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주관 및 운영 기관에서 개인(인증)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등의자 성명 (인)

유·이용합니다. 등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을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용량제한, 인원처리, 보호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합니다.

- 등의를 거두할 권리 및 등의를 거두할 경우의 흥이익 : 위 개인정보(신체) 정보의 제공에 관한 등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시장에 등의하여인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관계의 출입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 용·공유의 목적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인증)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등의방법 □ 등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등의방법 □ 등의하지 않음 □)
제공 등의 목적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인증)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등의방법 □ 등의하지 않음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주관 및 운영 기관에서 개인(인증)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생년월일 :
등의자 성명 (인)

<별지7> : 애로해소 건의문 작성 서식

등록번호

과제 제목

* 건의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목 작성

소관부서 : 기획계정부 평가분석과 000사무관 (02-000-0000)

(민원내용)

(현황)

<별지7> : <작제>

○

(문제점)

▫

〈건의내용〉

▫

• 조치 필요사항 :

▫

<별지8> : 종결회신문 서식

규제건의에 대한 결과 회신

수신 : 000님																			
제 목 : “00000” 결과 회신																			
<table border="1"> <tr> <td>〈건의사항〉</td> <td>일자</td> <td>발송처별</td> <td></td> </tr> <tr> <td colspan="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td> </tr> </table>				〈건의사항〉	일자	발송처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건의사항〉	일자	발송처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table border="1"> <tr> <td>〈처리결과〉</td> <td>방식</td> <td colspan="2"> <input type="checkbox"/> 협조조사 ■ 자료조사 ■ 두차협의 <input type="checkbox"/> 실무협의 ■ 정책건의 <input type="checkbox"/> 결과 자료조사(7.1.~7.13), 두차협의(7.15.~11.15), 종결(11.23) </td> </tr> <tr> <td>〈두차의전〉</td> <td>속관부서</td> <td>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정책과 국세청 소비세과</td> <td>02-2150-4254 02-87-1884</td> </tr> <tr> <td></td> <td>수 품 여부</td> <td colspan="2"> <input type="checkbox"/> 수출 <input type="checkbox"/> 일우수품 <input type="checkbox"/> 철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출증가 <input type="checkbox"/> 정책안내 </td> </tr> <tr> <td colspan="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td> </tr> </table>				〈처리결과〉	방식	<input type="checkbox"/> 협조조사 ■ 자료조사 ■ 두차협의 <input type="checkbox"/> 실무협의 ■ 정책건의 <input type="checkbox"/> 결과 자료조사(7.1.~7.13), 두차협의(7.15.~11.15), 종결(11.23)		〈두차의전〉	속관부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정책과 국세청 소비세과	02-2150-4254 02-87-1884		수 품 여부	<input type="checkbox"/> 수출 <input type="checkbox"/> 일우수품 <input type="checkbox"/> 철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출증가 <input type="checkbox"/> 정책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처리결과〉	방식	<input type="checkbox"/> 협조조사 ■ 자료조사 ■ 두차협의 <input type="checkbox"/> 실무협의 ■ 정책건의 <input type="checkbox"/> 결과 자료조사(7.1.~7.13), 두차협의(7.15.~11.15), 종결(11.23)																	
〈두차의전〉	속관부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정책과 국세청 소비세과	02-2150-4254 02-87-1884																
	수 품 여부	<input type="checkbox"/> 수출 <input type="checkbox"/> 일우수품 <input type="checkbox"/> 철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출증가 <input type="checkbox"/> 정책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table border="1"> <tr> <td>〈관련법령〉</td> <td colspan="3">주세법 시행령 (별표5), 등별 시행규칙 (서 4292) 등</td> </tr> <tr> <td>〈자활단 의견〉</td> <td>처리결과</td> <td>증명(안내·시정)</td> <td>등록번호</td> </tr> <tr> <td></td> <td colspan="3">제2012-0367호</td> </tr> <tr> <td colspan="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td> </tr> </table>				〈관련법령〉	주세법 시행령 (별표5), 등별 시행규칙 (서 4292) 등			〈자활단 의견〉	처리결과	증명(안내·시정)	등록번호		제2012-036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관련법령〉	주세법 시행령 (별표5), 등별 시행규칙 (서 4292) 등																		
〈자활단 의견〉	처리결과	증명(안내·시정)	등록번호																
	제2012-036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증의 : 000 규제개선팀장 02-730-2470																			
중 소 기 업 음 부 증 																			

<별지9> : 규제개선 권고문 작성 서식

등록번호

과제 제목(건의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목 작성)

소관부서 :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000사무관 (02-XXXX-XXXX)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별지8> : 종결회신문 서식

000님의 규제·애로 건의 결과회신											
당사자	이기철 (02-730-2471)	등록번호	2014-0131								
소관부서	산업부 민지출발과(000-4140)	접수일자	2014.1.11.								
건의사항	산업안전 대 일주 암증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대 일주 암증 합리화 											
<table border="1"> <tr> <td>처리결과</td> <td colspan="3"> <input type="checkbox"/> 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주암증 <input type="checkbox"/> 정기추진 <input type="checkbox"/> 정책안내 <input type="checkbox"/> 수출증가 <input type="checkbox"/> 기관설명 </td> </tr> <tr> <td colspan="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d> </tr> </table>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주암증 <input type="checkbox"/> 정기추진 <input type="checkbox"/> 정책안내 <input type="checkbox"/> 수출증가 <input type="checkbox"/> 기관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주암증 <input type="checkbox"/> 정기추진 <input type="checkbox"/> 정책안내 <input type="checkbox"/> 수출증가 <input type="checkbox"/> 기관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	산업정책 활성화										
중 소 기 업 음 부 증 											
<p>◆ 규제개선 2월말 예상일</p> <p>기획재정부 국세청 / 등별 시행규칙 (2014. . .) 등 제2012-0367호 1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로 161-8 등록법인 4층 www.oenb.go.kr</p>											

<별지9> : <작성>

* 규제 내용을 포함하는 법규, 관행과 규제 이유를 기재

□ (문제점)

▫

- 보험학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합리적임을 두지하고,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의 기본 취지와 규제비표 및 혼익률 비교, 협약

<표 예시 : 조달청 중기간 경쟁제품 계약금액 영역별 동계>

구 분	5년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합 计
급증전수	511,785(86.1%)	60,025(5.5%)	7,447(1.4%)	549,214(100%)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 조치 필요 사항 :
- 합리적 규제 유예, 규제 차등화, 규제 예지 등 다양한 규제대안 마련

<0000번 시행령 개정 건의(안)>

: 예시

현재	개정건의(안)
제26조(고용촉진 지원금) ①	제26조(고용촉진 지원금) ①

□ 기대효과

- (예시) 공기업 등 공공기관(정부 및 지자체 제외) 중소기업 계약구매실적이 약 27.3조원(10년)이므로, 공공기관의 구매액이 3% (0.8조원) 증가할 경우 약 28.1조원으로 증가
- 총 구매액 28.1조원은 중소제조업 연간 매출액의 5.9%
- 협약, 사업 수 등 규제개선시 수혜를 받는 기업수 등 파악

<참고1> : 규정 양식

<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계약 구매촉진 및 편의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비정) ① 중소기업과 같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체용역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후 수요기 있다면 중소기업과 인증 대체로 하는 계약경쟁 또는 중소기업과 양자 중에서 저렴 경쟁(이하 「중소기업과 계약경쟁」이라 한다) 일환에 따라 조달제작을 계약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과 같은 계약(이하 「제1항」) 당시에 따른 중소기업과 계약의 계약금액을 실시하는 계약대처를 결정하여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과 계약의 구매 능력이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용역으로 계약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대처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중소기업과 같은 계약(제2항에 따른 계약대처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기업 및 소수인 중소기업 지원」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수인 중소기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수를 계약 대체용역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수탁할 수 있다.
- ④ 중소기업과 같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같은 범위의 계약 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의 행정법에 대한 계약 실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과 계약(이하 「제3항」)에 대한 계약은 저여 대 허락을 계약의 행정법에 대한 계약 실시 기준을 따르도록 정하여야 한다.
- ⑤ 중소기업과 같은 제4항에 따른 계약 실시 기준을 정할 때 중소기업과 계약의 행정법, 기술법 및 계약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계약 구매촉진 및 편의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중소기업과 계약제품의 기정) ① 중소기업과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과 같은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계약하여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전에 중소기업과 함께 회장(이하 「총임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징거의 절차를 거쳐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임회장을 해당 계약의 경쟁제품 지정 담당성 중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별지 11> 징계 감경 요청서

징계 감경 요청서

요청자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직위(급)	개학기간
		한 자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비의협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부처에 재직중인 ○○○은 1982.10.4에 ○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하여 1996.2.10부터 현재 까지 재직중인자로. -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 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징계의결 요구하는 것이며. 			
요청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협의와 관련, 비의협의 내용이 규제 개선 또는 애로 해결과 관련한 직무 연관성이 있어 징계 감경 및 면제를 요청함 			
<p>위와 같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요청자 000 [날인]</p>					

<별지 11> 징계 감경 요청서

징계 감경 요청서

요청자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직위(급)	개학기간
		한 자	신년월일		
주 소					
비의협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부처에 재직중인 ○○○은 1982.10.4에 ○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하여 1996.2.10부터 현재 까지 재직중인자로. -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 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징계의결 요구하는 것이며. 			
요청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협의와 관련, 비의협의 내용이 규제 개선 또는 애로 해결과 관련한 직무 연관성이 있어 징계 감경 및 면제를 요청함 			
<p>위와 같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요청자 000 [날인]</p>					

<별지 12>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건의서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건의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직위(급)
	한자	주민등록 법호		재직기간
주소				
비위혐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부처에 재직중인 ○○○은 1982.10.4에 ○급 공재로 공직에 입문하여 1996.2.10부터 현재 까지 재직중인자로. - 위 혐의자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를 위반 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징계 의견 요구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혐의자의 관련된 비위혐의 내용은 규제 개선 또는 애로 해결과 관련한 직무 연관성이 있고 ○ 직무를 행할에 있어 성실하게 처리 			
<p>위와 같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중소기업 읍부즈만 [인]</p>				

<별지 12>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건의서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건의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직위(급)
	한자	성년월일		재직기간
주소				
비위혐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부처에 재직중인 ○○○은 1982.10.4에 ○급 공재로 공직에 입문하여 1996.2.10부터 현재 까지 재직중인자로. - 위 혐의자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를 위반 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징계 의견 요구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혐의자의 관련된 비위혐의 내용은 규제 개선 또는 애로 해결과 관련한 직무 연관성이 있고 ○ 직무를 행할에 있어 성실하게 처리 			
<p>위와 같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중소기업 읍부즈만 [인]</p>				